

2.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수도 사용자의 신고의무사항과 위반시 행정처분사항, 급수장치에 대한 승계의무 사항 등 자의적인 판단과 관 편의적인 사항을 주민편의의 제공과 불편해소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수도사용자의 신고 의무사항중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추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.(안 제20조)
- 신고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직원 직권으로 급수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처분규정을 일부 완화.(안 제20조)
-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가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사항을 승계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.(안 제24조)

□ 검토보고

- 조례 제20조에서 제1항에서 정한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사항중 제7항은 “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”으로 규정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있어 이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제2항에서는 수도신고 미 이행자에 대하여 수도관계직원이 “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”로 규정하던 것을 “신고의무를 촉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여야한다”로 개정된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바람직하며

- 조례 제24조 제2항의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“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권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토록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행정편의의 규정으로 이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.

서 면 답 변 자 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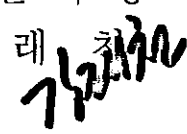
질문의원	류 한 철 위원장	답변부서	건설국 도시과
질문제목	통일촌 농산물직판장 부지의 기부채납 토지의 임대료 감면		

□ 질문요지

- 통일촌 농산물직판장 부지를통일촌에서 기부채납 하였을때 공유재산 임대료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항인데 공유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허가한 이유는?

□ 답변자료

- 파주시 농산물직판장 부지 백연리 1497번지 1,024㎡와 1498번지674㎡는 실제로는 통일촌 부락에서 매입하여 파주시로 기부채납 되었으나, 서류상으로는 1993년 2월 10일 전소유자 이종창(서울 관악구 신림동 661-1)으로부터 기부채납 이전 되었으므로,
- 부득이 공유재산을 유상으로 허가 하였습니다.

답변자 직위 : 건 설 국 장
성명 : 강 래 

토 지 대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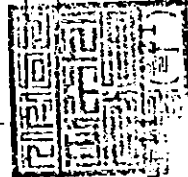
고유번호	4151038021-11498-0000		
토지소재	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		
지 번	1498	축 척	1:1200

도면번호	13	발급번호	001121-0017-02
장 번호	1-1	처리시각	09 시 38 분 07 초
비 고		작성 자	송현영

토 지 포 시			소 유 권		
지목	면 적 (㎡)	사	유	주	소
				변 등 일 자	성 명 토 지 번 호
				변 등 원 인	
(22) 밭	*674*	(67) 1991년 9월17일 경지정리 완료		1991년 9월17일 (08) 편지	서울 전학구 신림동 661-1 이종창 390829-1069323
(22) 밭	*674*	(50) 1996년 3월 1일 파주군 여서 행정구역명칭변경		1991년10월 8일 (09) 축락등기	서울 전학구 신림동 661-1 이종창 390829-1069323
(24) 잡종지	*674*	(40) 1996년 7월26일 지목변경		1993년 2월10일 (03) 소유권이전	파주군 3137
		이 하 여 백		이 하 여 백	
등급수정년월일	1991. 9.17 (23)	1991. 9.17 설정 80	1992. 5.30 수정 88	1993. 1. 1 수정 96	1994. 1. 1 수정 100
토지등기(기준수확량등리)				1995. 1. 1 수정 101	

토 지 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 분

파 주 시 장
(수인종지가 인명(철부)되지 아니한
종류는 그 효력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)



* 수인종지가 철부 수인종지가 아니한 등분은 그 효력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.
* 파주시 수인종지인 경우 계약금 50% 이내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파탈로 처리된 것이 있음을 명제 합니다.

고유번호	4151038021-11497-0000		
토지소재	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학연리		
지 번	1497	축 척	1:1200

토 지 대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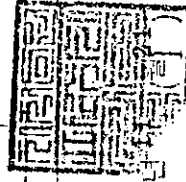
도면번호	13	발급번호	001121-0017-01
장 번호	1-1	처리시각	09 시 38 분 07 초
비 고		작성 자	송현영

토 지 포 시				소 유 권			
지목	면 적 (㎡)	사	유	번 들 일 자	성 명 또 는 명 칭	등 록 번 호	
(21) 답	*1024*	(67) 1991년 9월17일 경지처리 완료		1991년 9월17일	서울 관악구 신림동 661-1		
(21) 답	*1024*	(50) 1996년 3월 1일 파주군 여서 행정구역명칭변경		(08) 환지	이종창	390829-1069323	
(24) 잡종지	*1024*	(40) 1996년 7월26일 지목변경		1991년10월 8일	서울 관악구 신림동 661-1		
		이 하 여 백		(09) 축담등기	이종창	390829-1069323	
				1993년 2월10일			
				(03) 소묘권이전	파주군	3137	
					이 하 여 백		
등금수정년월일	1991. 9.17	1991. 9.17	1992. 5.30	1993. 1. 1	1994. 1. 1	1995. 1. 1	
토지공률(기준수확량공률)	80	88	96	100	101		

토 지 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 본

파 주 시 장

(수입증지가 인영(철부)되지 아니한 증명문 그 효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)



* 수입증지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등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.

*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공시(부동산의 소유권변경)에 따라 2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.

서 면 답 변 자 료

질문의원	민 대 승 의원	답변부서	건설국 도시과
질문제목	통일촌 농산물직판장을 통일촌에 매각할 수 있는지?		

☐ 질문요지

○ 통일촌 농산물직판장은 최초 사업추진시 통일촌 부락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파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실질적인 운영도 부락에서 운영하고 있어 통일촌에 매각할 수 있는지?

☐ 답변자료

○ 통일촌 농산물직판장은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으로,

○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매각은 금지하고 있으며,

○ 매각이 이루어지려면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야 하나, 통일촌농산물직판장은 본래의 목적대로 건설하게 운영되고 있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는 불가합니다.

답변자 직위 : 건 설 국 장
 성명 : 강 레 